



# Q & A 모음

사회적경제기업이 묻고, 회계사가 답하다.



사업확장 초기 단계의 기업입니다. 법인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대표이사의 사비를 법인 사업 자금으로 운용했습니다. 이 건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법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요?

1. 법인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조달하는 방법이 주주(혹은 조합원)로부터 자본으로 조달하거나 자본 외에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법 등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조달할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 이를 보통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수금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공식적으로 차입금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수금도 일시적으로 회계처리가 되는 계정과목으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가수금)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이 다른 곳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지급할 이자보다 과하게 지급하여 대여한 자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법인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불이익(해당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이 다른 곳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한다면 세무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해당 차입금 등은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이를 채무의 출자전환이라고 함), 주식회사는 가능합니다만, 협동조합 등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이 채무의 출자전환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으로 법무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과는 별개로 표기해야 하는 건가요?



1.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심사지침에 따르면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은 아래 3가지를 의미합니다.
  -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3)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2.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여기서 배분 가능한 이윤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해당 사업연도 이익준비금설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므로 현금 배당할 경우에 현금 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하고 해당 금액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 금액이 배분 가능한 이윤입니다.  
따라서 이 배분 가능한 금액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위의 배당 가능한 이윤 금액 이상으로 현금과 예금을 위 1번의 사회적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이란 미처분잉여금을 사회적목적사용적립금(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적립할 경우 사용하는 명칭의 예시)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관에 적립하도록 명기되어 있다면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제 현금과 예금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예시

(1) 미처분잉여금		800,000
1) 전기이월잉여금	300,000	
2) 당기순이익	500,000	
(2) 잉여금의 처분		440,000
1) 이익준비금	10,000	
<b>2) 사회적목적사용적립금</b>	330,000	
3) 현금배당	100,000	
(3) 차기이월잉여금		360,000

\* 예시는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을 규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7. 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처럼 사회적목적사용적립금을 적립한다고 하여도 실제 현금과 예금 등으로 해당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적립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현금과 예금의 지출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추가 의견**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잉여금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을 규정하였으면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적립한 후 현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의 현금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업의 회계·세무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업에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1. 법인은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와 법인세 신고 시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2. 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1) 회계와 세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인력
  - (2) 관련된 회계·세무프로그램
3. 회계프로그램은 초기에 약간의 목돈이 들여 구매하거나, 매월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 인력은 업무의 양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법,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법, 시간제 등으로 채용하는 법 등 법인의 매출과 비용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회계·세무 전문인력의 채용이 힘들다면 결국은 현재 내부 직원이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가 쉬운 업무가 아니며 또한 가산세 납부 등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직원이 맡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5. 사업의 초창기에는 회계세무를 보통 전문적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세무사 사무실 포함)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 아웃소싱하는 목적은 활용 가능한 자원(인적 및 재정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된 자원을 핵심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집중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관리보다는 마케팅일 것입니다. 즉 매출의 증대가 더 중요하고 이 부분에 제한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리영역인 회계·세무 관리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추가 의견** 아웃소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심역량(제한된 자원)의 핵심사업 집중일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작년 결산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자료에서 사용하는 회계 용어가 다른데, 결산이 맞게 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잉여금처분계산서는 각각 해당 정보의 이용자들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회계용어(일반적으로 계정과목)가 다릅니다. 운영성과표는 일정한 기간(회계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위한 비용의 내용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인 수익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법인의 사업 기간(회계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의 결과 혹은 자본조달의 결과로서 일정 시점의 자산의 항목과 해당 자산의 귀속(부채와 자본)을 밝혀주는 재무제표입니다.
2.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5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이고, 수익과 비용은 운영성과표(영리법인은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입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운영성과표의 결과물인 이익과 손실(이를 결산 후에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라 함)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협동조합은 조합원총회)의 결정사항을 기록하는 결산보고서입니다.
3. 따라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하는데 이의 회계용어(계정과목)가 수익과 비용의 계정과목과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4. 결산이 맞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계담당자가 회계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법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가 제대로 회계에 반영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 결과(결산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인의 감사 역할이기도 합니다.
5.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보통 다음의 두 가지 경우입니다.
  - (1) 고의적인 분식: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회계처리 대신 왜곡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2)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회계처리를 제대로 규정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회계처리의 오류 및 분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영역이며, 법인의 감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일정 부분 밝혀낼 부분입니다.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재무 건전성 등) 판단 지표 관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안정성 관리 지표 중 어떤 지표를 중점으로 관리해보면 좋을까요?

1.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성과의 측정과 지속가능성의 측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속 가능하기만 하고 사회적성과의 산출이 없다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생명은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적성과의 지표관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재무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재무제표분석지표는 다양하지만, 사회적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모순적인 지표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성비율 등은 이익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는 부적당할 수 있습니다.
3.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제표지표는 크게 안정성비율, 성장성비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유사한 규모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과 해당 기업의 과거 지표들과 비교를 통하여 현재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4. 안정성비율은 기업의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로서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1) 유동비율: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동자산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높을수록 안정적입니다.

$$\text{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 100$$

(2) 당좌비율: 유동자산 중 짧은 기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과 유동부채의 규모를 비교함으로써 단기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안정적입니다.

$$\text{당좌비율} = (\text{당좌자산} / \text{유동부채}) * 100$$

(3) 부채비율: 기업의 자기자본(자본)에 대한 부채 크기의 비율로 기업의 재무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위험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text{부채비율} = (\text{총부채} / \text{자기자본}) * 100$$

(4) 차입금의존도: 총자산(총자본)에 대비한 차입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안정적입니다.

$$\text{차입금의존도} = (\text{차입금} / \text{총자산}) * 100$$

(5)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중에서 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 높을수록 재무적 안정성이 좋습니다.

$$\text{자기자본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총자산}) * 100$$

5. 성장성비율은 기업이 과거보다 성장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매출증가율: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의 얼마 정도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text{매출증가율} = [(\text{금년도 매출} - \text{전년도매출}) / \text{전년도매출}] * 100$$

(2) 총자산증가율: 전년도에 비하여 자산의 규모가 얼마 정도 성장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text{총자산증가율} = [(\text{금년도총자산} - \text{전년도총자산}) / \text{전년도총자산}] * 100$$

(3) 순이익증가율: 전년도에 비하여 당기에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순이익의 증가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감소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적절한 지표는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참고적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ext{순이익증가율} = [(\text{당기순이익} - \text{전년도순이익}) / \text{전년도순이익}] * 100$$

**추가 의견**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부분은 영리법인의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지출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고 지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1년 7월부터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와 50,000원 이하의 기타소득 지급 등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4. 원천징수에 따른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를 정확하게 징수하려면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고가 들어가야 국세청에서는 소득자의 1년 기간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서비스의 원가계산 어떻게 하나요?



1. 원가계산은 대단히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관한 회계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원가계산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가계산 단위는 다양합니다. 제품군별, 제품 단위별, 부서별, 프로젝트별 등 다양한 범위내에서 원가계산이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회계처리 시 원가를 판관비와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만 설명하겠습니다.
2. 제조업에서 특히 원가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의 크기를 결정하여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전체원가를 생산된 제품 수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결정하고 이 결정된 단가에 의하여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3. 기업의 사업 활동은 크게 구매, 제조(가공), 판매활동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원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은 가공을 위한 구매활동과 가공활동입니다. 이러한 구매와 가공 과정에서 소비된 자원의 크기를 원가라고 하는데, 이 원가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직·간접으로 소비된 것에 제한합니다. 따라서 판매와 기타 관리활동에 소비된 경제적 자원(비용)은 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합니다.
4. 일단 기업에서 비용의 원천에 따라 원가와 판관비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접원가와 간접공동원가를 구분할 수도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원자재, 부자재 등 재료비
  - 생산과정에 투입된 인건비(직접인건비 생산관리영역의 간접인건비)
  -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 전력비, 소모품비, 생산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 등
5. 서비스업의 경우 원가와 판관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서비스 생산부분과 관리부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경우에는 이것이 쉽게 구분될 수 없습니다. 재료비와 소모품비 등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인건비 등은 구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비스업도 서비스의 생산 혹은 가공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원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생산과 관리의 공통비용은 합리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 의견** 원가계산 부분은 내용이 복잡하여 보통 직접적인 컨설팅의 영역으로 자문의 수준에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거래가 회계처리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1. 단식부기는 현금과 예금의 증감 금액과 이유를 적어 놓는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는 현금과 예금 등(자산이라고 함)의 귀속(내 돈 = 자본, 남의 돈=부채)의 꼬리표를 붙이고, 특히 내 돈의 증감과정을 따로 구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기록(손익계산서 혹은 운영성과표)하는 장부입니다. 즉 복식부기는 자산(현금과 예금 및 현금 등으로 환전이 가능한 것)에 내 돈과 남의 돈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2. 복식부기에 필요한 개념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인데 일정한 사건이 이러한 개념과 일치(회계적 사건이라고 함)하고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때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같은 금액을 입력하여 자산의 증감과 그 귀속을 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3. 먼저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사건(회계적 사건)을 확인한 후 어떠한 계정과목(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5요소의 하부단위)과 얼마의 금액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분개라고 합니다. 분개가 되면 전산프로그램이 그 결과물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운영성과표)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물인 재무제표는 분개하는 첫 번째 과정만 제대로 처리하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과정의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것은 분개입니다. 분개란 차변과 대변에 일정한 계정과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을 설립할 때는 현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 (1) 단식부기: 예금 10,000,000원 자본금 납입
  - (2) 복식부기: 차변) 예금 10,000,000원 대변) 자본금 10,000,000원
 복식부기란 위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면서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원인과 귀속을 자본금으로 설명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직원이 출장 중 사용한 식비에 대해 일반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 했습니다. 이 지출 건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1.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 처리에 대한 관점은 회계적 관점과 세무적 관점이 있습니다.
2. 회계적 관점에서는 해당 지출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회계처리만 적절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즉 출장에 대한 증빙과 경비 사용한 식비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에 대한 증빙(대체로 세무적인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출장에 관한 규정, 출장명령서, 지출결의서 등)으로 출장과 밥 먹을 만한 사유가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세법에서는 지출과 비용(세법에서는 손금이라고 함)에 대한 인정 자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간이영수증, 송금증, 지출결의서 등으로 지출 자체가 확인될 수 있다면 세무상 불이익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출장명령부, 지출결의서 등 다른 증거로서 출장과 식비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4. 법인카드 등이 없을 때는 출장 간 직원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이 인정되므로,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증거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서 회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회계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며, 조직의 설립목적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여 보여줌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이나 동일합니다. 차이는 각 조직의 설립목적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2. 결국 회계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주주 겸 대표이사는 어떠한 정보를 원할까요? 주식회사를 설립한 목적인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이익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 결과로서 총 돈(자산) 중에서 부채(남의 돈)를 차감한 순수한 내돈(자본)은 얼마인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회계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회계입니다. 그래서 주주는 해당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자금을 더 투자할 것인지? 차입을 더 할 것인지?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에 대한 달성정도를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계의 주된 기능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입니다. 그 기본은 조직의 설립 목적의 달성 정도의 측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목적은 다릅니다. 영리법인회계는 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여 보여줌으로써 영리법인의 주주 등 투자자와 자금대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창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자와 이해관계자는 어떠한 정보를 원할까요? 주식회사처럼 손익을 크기를 측정한 손익계산서와 총 돈(자산) 중에서 남의 돈(부채)와 내 돈(자본)으로 표시한 재무상태표를 원할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4.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이용자들도 영리법인의 투자자가 그랬던 것처럼 조직의 설립목적의 달성 정도에 관한 정보를 당연히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작성자들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목적의 달성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일반 재무제표에는 표시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사업보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얼마의 취약계층을 고용하였는지?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창출하게 하였는지?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보고서 등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5. 일반적인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를 해석할 때도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손익(손실과 이익)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비용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영리법인에서는 줄여야 할 요인입니다. 그 비용 중에 인건비(급여), 상품매입, 지급수수료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상대방의 소득(혹은 수익)을 형성합니다. 영리법인의 입장에서 급여는 줄여야 할 요소이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늘려야 할 요소입니다. 생활소비자협동조합에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해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생활을 안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줄여야 할 비용으로서 급여와 매입이 아니라 직원의 소득으로서, 농민의 소득으로서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려야 할 요소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정반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